

2. POSTECH Fellow 운영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POSTECH Fellow 운영세칙	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운영세칙	2016-6 회 이사회 반영: 명칭변경 (POSTECH Fellow → POSTECH University Professor) ※ 이하 동일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한 <u>POSTECH Fellow</u>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한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자격) <u>POSTECH Fellow</u> 는 .. (생략)	제2조(자격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는 .. (현행유지)	
제3조(임용원칙) ① <u>POSTECH Fellow</u> 는 .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임용원칙) ①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는 .. (현행유지) ② (현행유지)	
제4조(임용인원) <u>POSTECH Fellow</u> 는 정년보장 교원 총수의 <u>10분의 1</u> 을 초과할 수 없다.	제4조(임용인원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는 정년보장 교원 총수의 <u>20분의 1</u> 을 초과할 수 없다.	2016-6회 이사회 반영: 임용가능인원 조정 반영(10% → 5%)
제5조(임용기간) ① <u>POSTECH Fellow</u> 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학과인사 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<u>POSTECH Fellow</u> 는.. (생략)	제5조(임용기간) ①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학과인사 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할 수 있다. ②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는.. (현행유지)	단순문구 변경 (재임용 시에도 3년이내에서 임용)
제6조(임용절차) (생략)	제6조(임용절차) (현행유지)	
제7조(임용시기) <u>POSTECH Fellow</u> 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기를 <u>조절</u> 할 수 있다.	제7조(임용시기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.	단순문구 변경(조절 → 조정)
제8조(처우) <u>POSTECH Fellow</u> 로 .. (생략)	제8조(처우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로 .. (현행유지)	
제9조(중복임용) <u>POSTECH Fellow</u> 임용은 .. (생략)	제9조(중복임용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용은 .. (현행유지)	

제10조(준용) <u>POSTECH Fellow</u> 임면 및 처우 등에 .. (생략)	제10조(준용)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면 및 처우 등에 .. (현행유지)																					
	부칙 이 세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1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32 395 819 724"> <tr><td>구분</td><td>65세 이후</td></tr> <tr><td>신분</td><td>전임 또는 비전임</td></tr> <tr><td>급여</td><td>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% 내외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</td></tr> <tr><td>복리후생</td><td>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</td></tr> <tr><td>기타지원</td><td>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</td></tr> </table>	구분	65세 이후	신분	전임 또는 비전임	급여	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% 내외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	복리후생	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	기타지원	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	<p>(별표1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00 395 1487 724"> <tr><td>구분</td><td>65세 이후</td></tr> <tr><td>신분</td><td>전임</td></tr> <tr><td>급여</td><td>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~100%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</td></tr> <tr><td>복리후생</td><td>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</td></tr> <tr><td>기타지원</td><td>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</td></tr> </table>	구분	65세 이후	신분	전임	급여	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~100%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	복리후생	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	기타지원	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	<p>2016-6회 이사회 반영: 65세 이후 처우 개선(신분 및 급여 변경)</p>
구분	65세 이후																					
신분	전임 또는 비전임																					
급여	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% 내외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																					
복리후생	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																					
기타지원	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																					
구분	65세 이후																					
신분	전임																					
급여	65세 해당연도 연봉의 <u>30~100%</u>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																					
복리후생	필요할 경우 교수APT, 연구실, 실험실을 지원																					
기타지원	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																					